

항공 법인설립 안내

JUNE 2024

홍콩 법인설립 및 연간 비용

법인설립 및 첫해 연간비용 상세내역	Original Price	Discounted Price
홍콩법인설립 대행료	USD 219	FREE
홍콩법인설립 기업등록처 등기비용	USD 221 (HKD 1,720)	USD 221 (HKD 1,720)
2024/25년도 사업자등록증 비용	USD 283 (HKD 2,200)	USD 283 (HKD 2,200)
간사 연간서비스비용	USD 450	USD 225 (첫해 50%할인)
등기사업장 주소지 연간서비스비용	USD 322	USD 161 (첫해 50%할인)
고객정보확인절차(KYC) 비용	USD 65	FREE
은행계좌개설 어랜지 비용	USD 400	FREE
법인 도장/철인 제작비용	USD 70	USD 70
통신 주소지 1인당 연간 서비스 요금(선택 사항)	USD 65	USD 65
서비스 비용 총액	USD 2,030	USD 960 (선택사항 제외)

포함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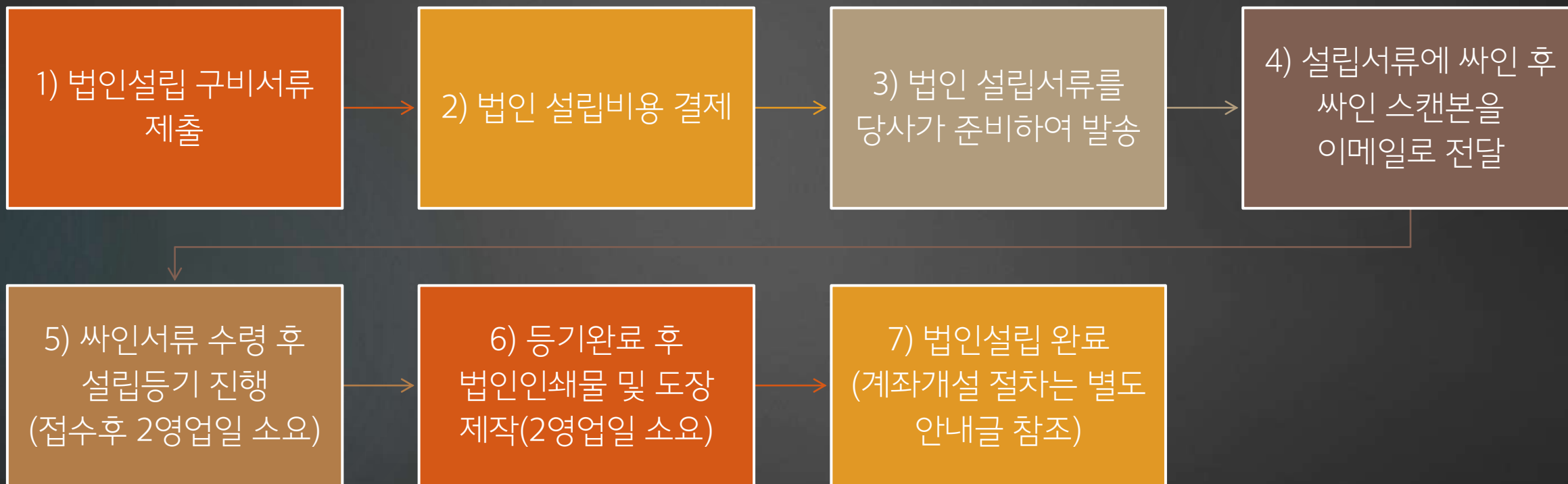
1. 법인설립증
2.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 요청시 무료처리
3. 정관책자
4. 주권(株券) 증서
5. 법인 등기사항 기록부
6. 회사 명판(common seal)
7. 회사 도장 (일반용/서명용) 2개
8. 연간 간사등재
9. 연간 주소사용 및 우편물(스캔/이메일) 서비스
10. 급여지급 신고 (우편료 HKD300 별도, 2인까지 무료)
11. 법인 정보 및 고용현황 신고
12. 법인 중요결정자 명부 작성 및 비치
13. 법인의 주주/이사/간사 명부 및 지배구조도 작성 및 비치
14. 사업관련 기초자문
15. 전화응대 및 팩스수신 서비스

홍콩 법인 연간 갱신비용

연간비용 상세내역	비용
사업자등록 (정부) 비용 (HKD250~2,450) *매년변동	USD 32 ~ 315
간사 연간서비스비용	USD 450
등기사업장 주소지 연간서비스비용	USD 322
고객정보확인절차(KYC) 비용 *2인 자연인 주주/이사 기준	USD 32 (50% 할인)
연차보고 등기 (정부) 비용 (HKD105)	USD 14
통신 주소지 1인당 연간 서비스 요금(선택 사항)	USD 65
비용 합계	USD 850~1,133 (선택사항 제외)

*누적갱신에 따라 당사 비용에서10~30% 할인

홍콩법인 설립절차



설립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본인인증서류, 여권을 들고 찍은 본인사진, 혹은 당사 담당자와 화상미팅을 통한 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Certificate of Passport Copy 발급)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ru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 한국 거주: 영문등본 혹은 초본(주민센터)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Bank Statement, Tax Demand Note, 혹은 정부에서 발행한 주소증빙서류
4. 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5. 법인 구성원등록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상기 구비서류는 개인 주주/이사 기준이며 주주가 법인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지정연락담당자 등록안내

[지정연락담당자(Designated Contact Person)의 역할 및 규정]

역할: 신설되는 법인과 귀사와의 업무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담당자

담당업무: 법인 및 업무관련 문의, 진행사항 확인, 등기문서 관련 문의 등의 연락. 귀사의 정보 및 문서 연람가능. 귀사의 우편물 문서 연람 가능.

목적: 귀사의 정보보호, 명의도용방지, 업무의 효율화 등

비용: 1인까지는 무료.

(추가되는 인원의 경우, 1인당 연간 USD 260의 비용 발생)

** 상기의 방식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정연락담당자를 1인으로 하되, 연락을 주고받으실 이메일 연락처를 2개로 하시거나 혹은 공용이메일을 생성 하셔서 내부적으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비용이나 별도의 등록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 교신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이메일 주소 모두를 참조로 하셔야 하며, 카톡 연락시 지정연락담당자 및 임원분을 함께 추가하여 연락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정연락 담당자 이 외의 분께서 (이메일 외에) 유선상이나 SNS(카톡, 위챗 등) 상으로 귀사의 법인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정보 보안상 서비스 응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연락담당자 등록 구비서류

1. 여권사본
2. 본인인증 (여권들고 사진찍기 혹은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ru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3.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 한국 거주: 영문등본 혹은 초본(주민센터)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4. 법인 구성원등록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홍콩법인 기타서비스

주주/이사 변경

법인설립 후 영업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HKD 2,000
법인설립 후 영업이 발생된 경우: HKD 2,000 + 회계결산 비용
주주/이사 변경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KYC 및 Due Diligence 서류처리 대행시 별도 비용 발생

폐업

폐업비용: HKD 3,000
처리 소요기간: 6~7개월
** 세무보고, 통계청, 기업등록처 등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보고서를 누락시킨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폐업처리 기간동안 법인의 연차보고 및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갱신되어 있어야 함.
** 법인의 갱신시 폐업을 요청하시는 경우, 법인갱신비용 + 폐업비용이 발생합니다.
** 세무보고, 직원급여신고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을 모두 처리하고, 벌금을 납부하신 이후에 진행 가능.

서류 공증

공증서류 안내 (중국 합자기업/외자기업 설립시 제출 용도)
BR / CI / NNC1(법인설립 서류) 공증비(정본1부, 부분1부): HK\$6,000
상기 공증서류에 여권사본 삽입시: HK\$200
정본1부 추가시: HK\$760
부분1부 추가시: HK\$400
** 정본 및 부분을 동시에 추가 불가.
정본 혹은 부분 둘중에 한 종류만 추가 가능.
우편물발송비: HK\$160
Handling Charge: HK\$700
작업 소요기간: 5~10 영업일 (1~2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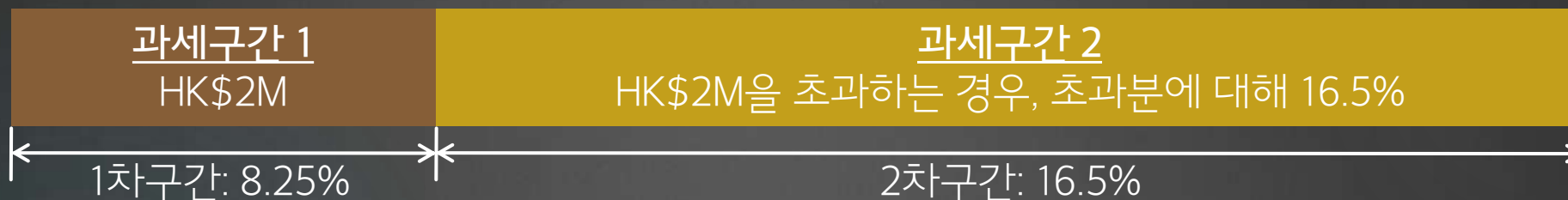
홍콩의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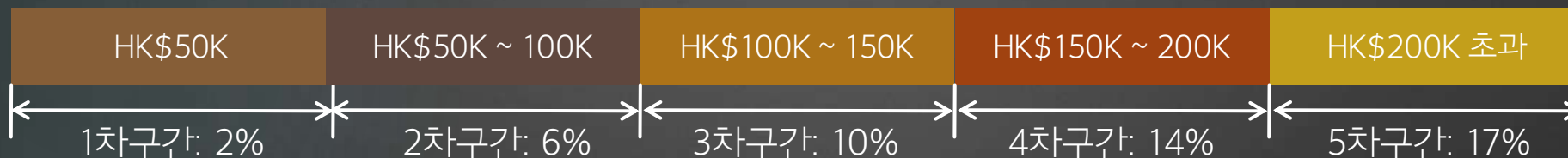
법인세: 8.25% ~ 16.5%

개인소득세: 표준세율 15% / 누진세율 2~17% (둘 중 저렴한 세율을 적용)

법인세: 과세가능수익(Assessable Profit) x 법인세율



개인소득세: 공제후 소득액 HK\$50,000 당 누진세율 (각 구간당 세율을 계산함)



홍콩 비거주자 개인소득:

홍콩내 체류일수가 1년기준 60일 미만인 경우: 홍콩 개인소득세 면제 *단, 이경우 거주지 관할 조세규정에 따라 과세
(예: 한국 거주인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

개인소득 공제액(홍콩거주자)

개인소득 계산시 공제액 : (홍콩거주자)

미혼자 본인공제:	HK\$132,000 (21,780,000원)
기혼자 본인공제:	HK\$264,000 (43,560,000원)
자녀공제(1인당):	HK\$130,000 (21,450,000원)
자녀출생공제:	HK\$130,000 (21,450,000원)
부양형제공제(1인당):	HK\$37,500 (6,187,500원)
60세이상 부양 부모/조부모 공제(1인당):	HK\$50,000 (8,250,000원)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1인당):	HK\$25,000 (4,125,000원)
한부모 부양공제:	HK\$132,000 (21,780,000원)
장애인 본인공제:	HK\$75,000 (12,375,000원)
장애인가족 부양공제(1인당):	HK\$75,000 (12,375,000원)
자기개발 비용공제:	최대 HK\$100,000 (16,500,000원)
노부모 주거지원 공제:	최대 HK\$100,000 (16,500,000원)
주택대출금 이자공제:	최대 HK\$100,000 (16,500,000원)
연금공제:	최대 HK\$18,000 (2,970,000원)
기타 각종 혜택:	세액할인 HK\$6,000내에서 100%

*자료출처(홍콩 세무국 공식 조세자료): <https://www.ird.gov.hk/eng/pdf/pam61e.pdf>

*환율계산 (2023년 7월): HKD1 = 165원



기타 세금

기타 세금:

관세(특수품목 제외), 배당세, 소비세, 주식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본이익세, 이자소득세, 투자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 자본세, 원천징수(로열티제외) 등

→ 없음 (또한, 부가세가 없어서 주기적인 거래신고 의무 없음)

[거래세]

주식양수도인지세: $\text{Consideration(거래가액)} \times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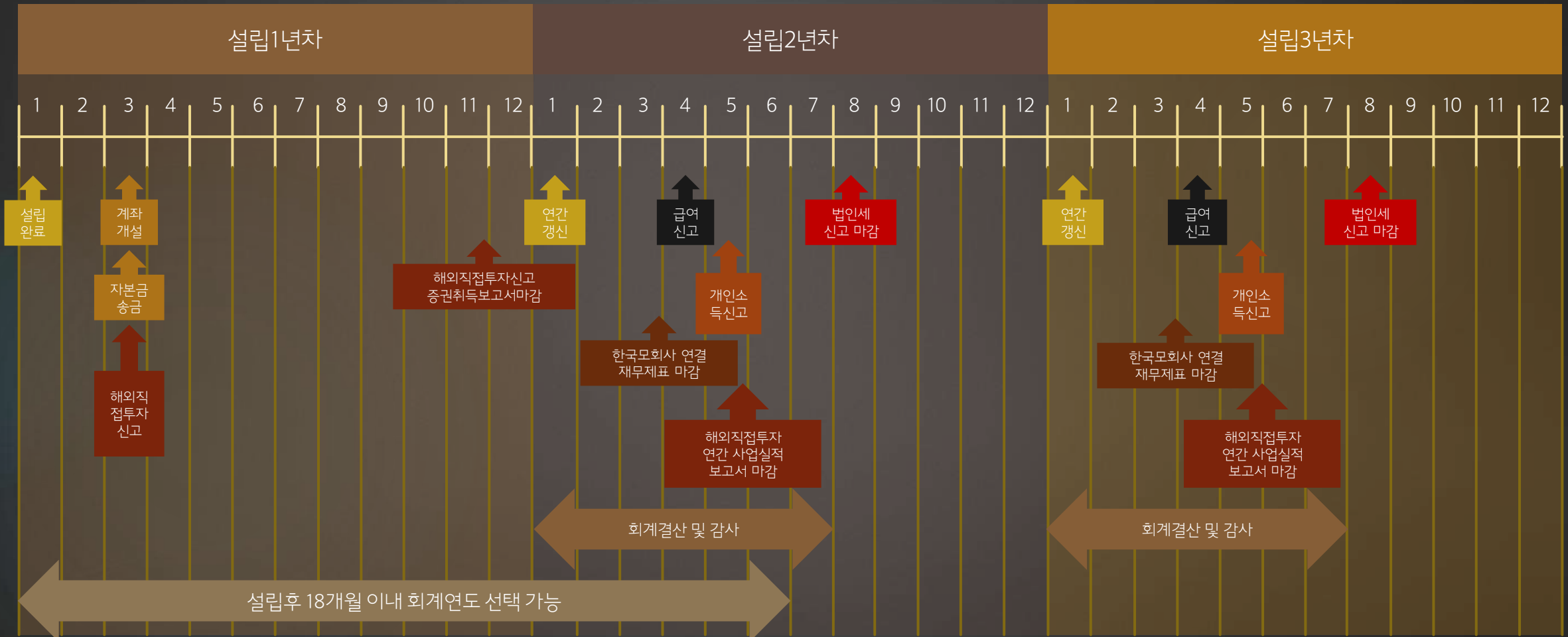
부동산거래인지세: 1.5%~8.5% *Scale 1 (Part 2) 기준

*상업지/거주지 및 영주권/비영주권자 차등적용(SSD/BSD 등)

부동산 임대소득세: (관련비용 + 총액의 20% 공제후) 15%



법인설립 전후 스케줄 (예시) 12월말 결산



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직접투자 대상

-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의 경우
- ❖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중 하기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1) 임원파견
 -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3) 기술의 제공 /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 4)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증액투자)
-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이상의 금전대여(대부투자)
- ❖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 자금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 1)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개인사업 영위)
 - 2)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해외직접투자신고

주의사항: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반드시 '사전신고' 해야 함.
최초 해외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사항에 해당함.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무)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 해야 함

(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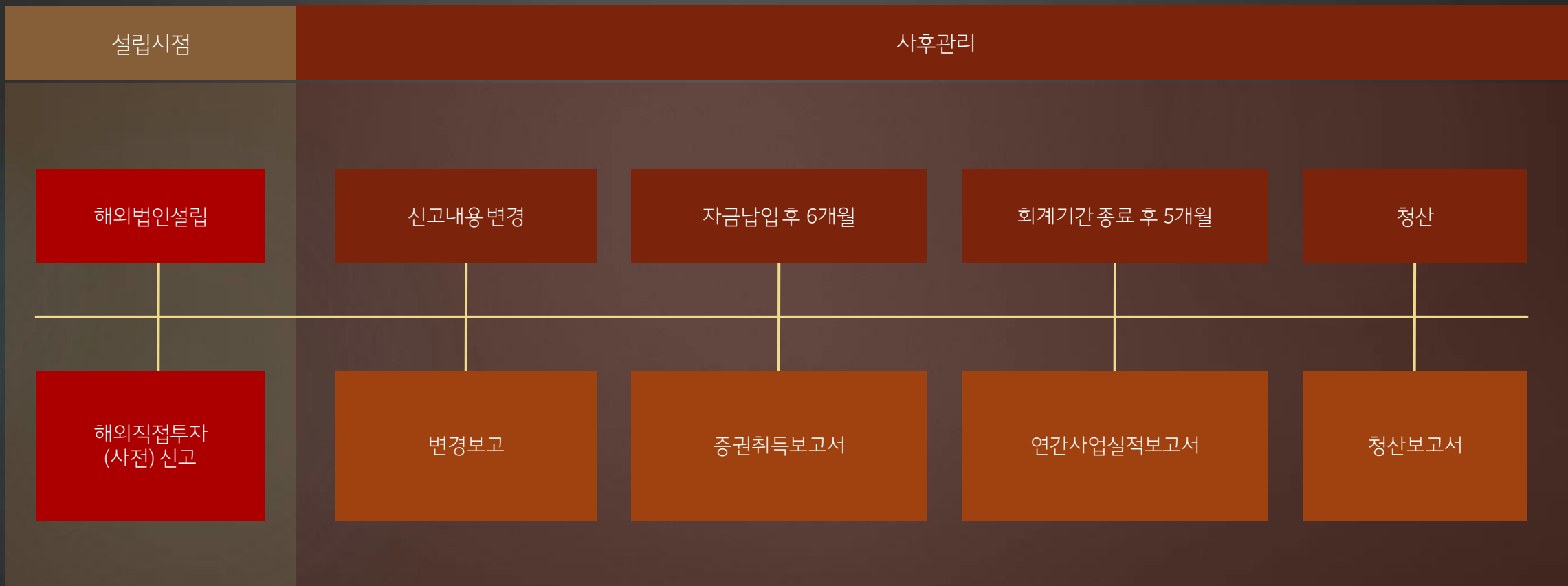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보고서 또는 서류등을 기한내에 은행에 제출

<사후관리의무이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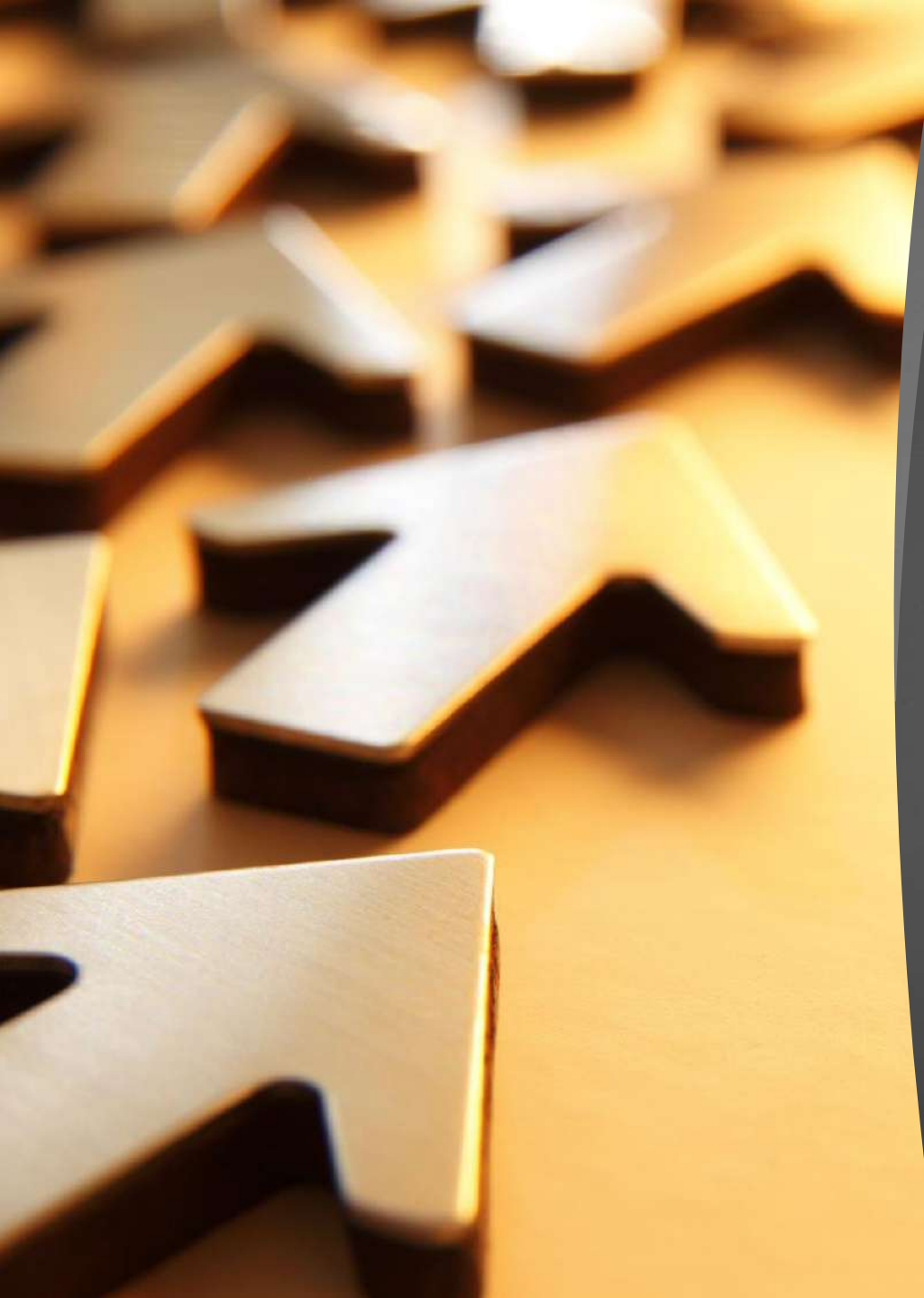
구분	제출기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및개인기업설립보고서를포함)	투자금액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이내
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즉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신고



*업무 진행 전 유의사항

1. PEP(정치적주요인물, 가족/친척 포함) 및 과거 금융이나 자금세탁과 관련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께서는 법인설립 및 당사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홍콩 기업조례 (Cap.622) 제 480조 1항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의 파산 과정 중에 있는 분께서는 법원의 허가없이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서는 안됩니다.
2. 홍콩법인을 타인명의로 설립하신 후 운영 하시려는 경우, 최고결정권자(Ultimate Controller) 및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ry Owner) 확인을 위하여 여권, 주소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셔야 합니다.
3.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원활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진행전에 반드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이 까다롭습니다.)
4. 법인계좌를 운영하시는 분의 영어나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분께서 영어나 중국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경우, 한국어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대표님이나 등재 이사분께서 현재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사업체를 직접(본인명의로)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은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 KYC 절차에서 진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암호화폐, 거래소, ICO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전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습니다.)
7. 법인설립 및 운영의 목적이 불법적 행위에 해당되거나 혹은 현행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현지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거절되며, 법인설립 이후라도 이와 관련한 사항이 당사로 부터 파악이 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대응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당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불법거래나 비윤리적거래에 대해서 자문이나 업무적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관련 링크

[홍콩법인설립 신청서](#)

[홍콩 법인설립 안내](#)

[은행 계좌개설 안내](#)

[회계/세무 안내](#)

[홍콩법인 vs. 싱가포르 법인](#)

감사합니다.

저희 미르아시아는 고객님의 성공을 기원드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찾아 뵙기를 바랍니다.

미르아시아 한국 대표번호: 02-543-6187

카카오톡/위챗/라인/텔레그램: mirrasia1

미르아시아홈페이지: www.mirrasia.com

미르아시아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